

# 기금관리규정

제정 : 2009. 09. 01.

개정 : 2015. 02. 06.

개정 : 2022. 08. 05.

담당자 : 전략기획실 (02-950-5424)

## 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정의)	제3조(기금의 설치)	제4조(기금의 재원)
제5조(기금운용의 원칙)	제6조(회계연도)	제7조(기금운용계획의 수립)	제8조(기금운용계획의 내용)
제9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	제10조(기금결산)	제11조(기금운용심의회)	
제12조(감사)			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, 연구, 장학 기타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,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,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기금”이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내규에 의하거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회계를 말한다.

**제3조(기금의 설치)** ① 총장은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규에 의하여 각종 기금(이하“학교발전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**제4조(기금의 재원)** ①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교비 출연금
2. 학교채의 발행 금
3. 기부금품
4. 시설물의 대여수익금 또는 운용수익금
5.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수익금

②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내규에 정하거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5조(기금운용의 원칙)** ① 기금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기금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

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,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관리주체는 학교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총장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6조(회계연도)**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**제7조(기금운용계획의 수립)** ① 전략기획실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08.05)

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총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.

**제8조(기금운용계획의 내용)** ①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이 첨부되어야 한다.

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, 자금의 조달,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.

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수입계획은 성질 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 별 또는 사업 별로 구분한다.

**제9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① 기금관리주체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 범위 안에서 세부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제10조의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기금결산)** ① 전략기획실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08.05)

② 제1항의 결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계산서로 하며 예금잔고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

**제11조(기금운용심의회)**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,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전략기획실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(개정 2022.08.05)

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12조(감사)** 총장은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, 지도하게 하거나 내부감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하게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&lt;별지 제1호 서식&gt;

## 자 금 운 용 계 획

(20 . 3. 1부터 20 . 2. 28까지)

(1) 수입 (단위 : 원)

과 목	20 회계연도	20 회계연도	증 감	산 출 근 거
미사용 전기이월 자금				
자금 수입 총계				

(210mm×297mm)

(2) 지출 (단위 : 원)

과 목	20 회계연도	20 회계연도	증 감	산 출 근 거
미사용 차기이월금				
자금 지출 총계				

(210mm×297mm)

&lt;별지 제2호 서식&gt;

## 자 금 계 산 서

(20 . 3. 1부터 20 . 2. 28까지)

(1) 수입 (단위 : 원)

과 목	예산액	결산액	증 감액	비고
미사용 전기이월 자금				
자금 수입 총계				

(210mm×297mm)

(2) 지출 (단위: 원)

과 목	예산현액				결산액	증 감액	비고
	예산액	예비비 사용액	전용증 감액(△)	차감액			

(210mm×297mm)